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5	5. / (총 34	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준 헌		044-202-1750
방역총괄팀	담 당 자	김 세 은		044-202-1754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이 선 영		044-203-2911
소통정책과	담 당 자	진 재 영		044-203-2913
중앙사고수습본부	팀장	신 현 두 류 재 현		044-202-1890 044-202-1803

코로LHI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민 유 정

담 당 자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석 연휴 소통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석연휴 소통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보상지원팀





044-202-1888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30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이미 지정되어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입국하고 있고 최근 확인서 위·변조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과 법무부, 외교부에게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게 단속 강화 및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료로라도 접종을 받고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 백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번 4차 추경으로 확보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 취약계층 접종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 백신 도입시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피는 추석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주요 역사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67개소), 문 여는 병·의원(1,539개소) 및 약국(3,960개소)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교통·의료 등 생활 정보에 대한 안내도 24시간 계속한다.
 - 이와 함께 특식비 지원, 필요 물품 전달 등 취약 ·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19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가용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중앙 공동 대응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또한, 역학조사 즉각대응팀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24시간 연락체계 구축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확진자 관련 추가 접촉자 파악 등 심층역학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 **경기도**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특수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1,619개소를 점검**하여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례 42건을 적발하였다.











평생친구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 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사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8%(612천 건) 감소하였다.
 - 단,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14%**(4,042천 건) **증가**하였다.
 - * (8.15.~8.16.) 33,484천 건→ (9.19.~9.20.) 28,830천 건→ (9.19.~9.20.) 32,872천 건
 -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5%**(12,050천 건) **감소***하였다.
 - * (8.15.~16.) 80,067천 건 →(9.12.~9.13.) 61,111천 건 →(9.19.~9.20.) 68,017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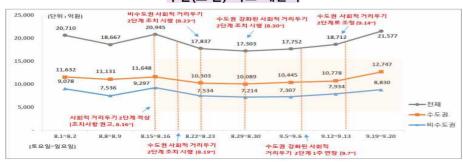
- 2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0.6%**(110천 건) **감소**하였다.
 - 단,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21.1%**(3.378천 건) **증가**하였다.
 - * (8.15~8.16) 19.509천 건→ (9.12~9.13) 16.021천 건→ (9.19~9.20) 19.399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3**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9.4%**(1,099억 원) **증가**하였다.
 - 직전 주말(9월 12일~9월 13일)과 비교하면 **18.3%**(1,969억 원) **증가**하였다.
 - * (8.15.~8.16.) 11.648억 원 → (9.12.~9.13.) 10,778억 원 → (9.19.~9.20.) 12,747억 원
 -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3%**(632억 원) **증가***하였다.
 - * (8.15.~16.) 20.945억 원 →(9.12.~9.13.) 18.712억 원 →(9.19.~9.20.) 21.577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평생친구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 특별방역기가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6일(일)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먼저 고향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도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 * 괴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www.auture.co.kr/home)' 홈페이지 등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 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 *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 벌초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봉안시설 사전예약 및 방역관리*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 *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 제한, 추석연휴 전·후기간(9월3주~10월3주) 제례실·유가족 휴게실 폐쇄,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면회를 금지하되,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영상면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명절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면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 영상면회 사례 】

- · A씨는 사지마비, 언어장에 등으로 직접 보호자와 통화할 수 없는 와상환자 로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하고, 사회복 지사와 간호사가 지켜보며 보호자의 문의에 답변 드리거나 환자의 표정, 행동 등을 관찰하여 알려드리고 있음
- 특히,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 제수용품과 선물 구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 료포틸(www.e-gen.or.kr) 등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 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
- □ 이와 함께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이번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은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경향과 특별방역기간 중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토의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높고, 방문판매·병원·사무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약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 권역별 주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 >

구분	총계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강원도	제주도
8.30~9.5	219명	162명	16명	11명	12명	11명	3명	1명
9.6~9.12	135명	100명	14명	3명	7명	9명	1명	0.4명
9.13~9.19	108명	84명	8명	6명	5명	3명	0.3명	0.6명
9.20~9.25	80명	63명	3명	5명	7명	1명	1명	0.2명

- 한편, **2단계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 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 이동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하였다.
- * 지난 주말(9.19~9.20)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9.12~9.13) 대비 14% 증가
-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완화하여 국민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감염 전파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9월 22일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 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 ②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 ③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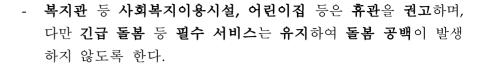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
-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
-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한다.
 -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팽이 만들기 등
 - 한편,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 하여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 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홍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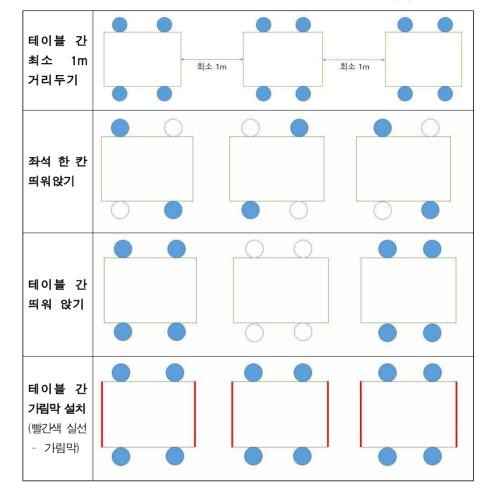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붙임 3 수도권 음식점·카페 관련 FAQ)
 - *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
 -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평생친구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하다.















- 위의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 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 고위험시설 각각에 의무화되었던 수칙을 유지한다.





평생친구

- □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 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10월의 첫 주(10.5~10.11)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4 추석연휴 소통계획

- □ 정부는 추석을 맞아 이동자제 등 **방역 소통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집중하면서 **취약 계층 돌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들이 **이동을** 자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이동자제·국민 위로 캠페인 '쉼'과 '우리 집 비대면 추석 풍경' 공모전 등을 통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는 새로운 명절 분위기를 제시하는 한편,
- 추석 연휴기간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 방역대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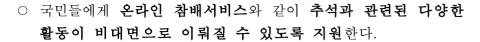












-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재난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정책을** 방송·책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 전통시장·긴급복지지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석 물가 및 추경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민생도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
 - 다만, 현장 행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방역 인력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6차 개산급 및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손실보상금 지급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9.23.)에 따라 9월 25일(금)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 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 원 등 총 858억 원을 지급한다.
- 이번 손실보상금의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 원을 집행하게 된다.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 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평생친구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 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2억 원**이다.
 - * (1차, 4.9.) 1,020억 원, (2차, 5.29.) 1,308억 원, (3차 6.29.) 622억 원, (4차, 7.31.) 1,073억 원, (5차, 8.31.) 996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6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억원)

			치	료의료기	관		선별
구분	총계	소계	감염병	국가지정	중증환자	기타	진료소
		그게	전담병원	입원치료	입원치료	치료의료	전표포
기관수	198	109*	55	23	63	5	89
지급액	826	712*	378	201	515	21	114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고,
- 보상항목은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31일 분까지), ②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31일 분까지), ③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 이번 지급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 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보상 4억 원이 포함된다.
 - * 병원이 의료업 외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 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 1차 손실보상금(8.31): 의원급 의료기관 35개소, 2.5억 원 지급
- 이번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 (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에 총 32억 원을 지급한다.

< 대상기관 유형별 2차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 >

(단위: 개소 백만 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기관수	425	110	47	260	8
지급액	3,206	2,842	54	259	51
(개소당 평균)	(-)	(25.8)	(1.1)	(1.0)	(6.4)

구분	합계	병	원		의원	
1 =	티게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110	3	5	94	2	6
지급액	2,842	952	571	1,257	29	33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한 손실규모가 컸던 57개 기관은 개산급으로 179억 원 기지급
-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영업장이다.











평 생 친 구

-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3호, 4호).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법 제70조제1항제5호).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법 제70조제1항제4호)
-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이다.
 - 한편,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1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2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 로부터 7일, 3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 로 보상하다.
 - * 각 조치의 이행 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기간은 제외
- 한편,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 원 미만으로 손실보상 금이 산출되었으나,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20.9월)으로 가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 워을 지급한다.
 -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 신청 가능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드리며,
- 이번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9.25.)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보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526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02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24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0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2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6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6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9월 2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361개소, ▲노래 연습장·유홍시설 4,310개소 등 41개 분야 총 2만3330개소를 점검 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30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9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3개반, 956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평생친구

- < 붙임 > 1.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 2. 수도권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3. 수도권 음식점·카페 관련 FAQ
 - 4.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구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성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기관, 기업	공 공 민 간	O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험시설 점검·단속 추석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 방역 실태 점검, 음주가 동반되는 활동 최소화











평생친구

붙임2

수도권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 매장 좌석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영화관·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주자,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규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수기충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교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수기명부 박성 시 시교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귀(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거거자),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평생친구

□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 전지출입명부 인증*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교회

※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비대면 예배만 실시	■ 비대면 예배만 실시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금지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평생친구

붙임3

수도권 음식점·카페 관련 FAO

Q1.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카페가 대상인가요? 무슨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매장 좌석(실내·외 포함)이 **20석을 초과**하는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대상임
- 20석 이하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함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
 -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Q2.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 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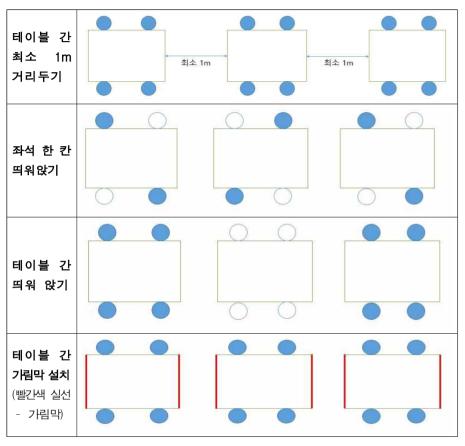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Q3.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평생친구

- Q4.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데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5.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 증*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평생친구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자),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마스크 착용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음식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다.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갑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